

• 소통의 연수 • 통합의 연수 • 안전한 연수



연수구보



발행 · 편집인: 연수구청장 / 발행처: 인천광역시 연수구 /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우)21967 ☎ 749-7392 / FAX 749-7399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부록 제1343호 2022. 11. 28.(월)

【규 칙】

- 인천광역시 연수구 규칙 제764호(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1

【공 고】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2-1670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출입 공고(사모지공원)) 6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2-1671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출입 공고(학나래근린공원)) 8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2-1677호(인천광역시 연수구 읍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0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2-1678호(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39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2-1697호(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공고) 48

【고 시】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시 제2022-72호(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52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시 제2022-73호(도로명주소 부여 고시문) 54

회							
람							

인천광역시 연수구 규칙(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1. 제안이유 ○ 공약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여 공약사업을 효율적으로 이행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구청장 취임 100일 이내에 공약사항을 최종 확정토록 명시(제5조제4항) ○ 공약사항 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천계획 수립토록 명시(제6조제1항) ○ 공약이행평가단 구성방법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변경(제10조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이 재 호

2022. 11. 28.

인천광역시 연수구 규칙 제 764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별로 관리번호를 지정하여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를 “한다. 이 경우 확정기한은 취임 후 100일 이내로” 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총괄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공약사항별로 관리번호를 지정하고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5조” 를 “제5조제4항” 으로, “대하여” 를 “대하여 확정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로, “고려하여” 를 “고려한” 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 라 한다)” 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인천광역시 연수구” 를 “구” 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연수구” 를 “구”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홈페이지”를 “구 홈페이지”로 한다.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단원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활동하지 않고, 구정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공약이행 평가 등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 중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발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공개모집에 신청하는 사람이 없거나 신청 인원이 모집정원에 부족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모집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진단 단원 위촉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3항 개정규정에 따른 무작위추첨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임기 만료 또는 결원에 따라 새로 단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약사항 및 시행계획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 종전의 규칙에 따라 확정된 공약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확정된 것으로 본다. 시행계획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공약사항 확정) ① ~ ③ (생략) ④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 보고된 내용을 검토한 후 공약사항을 최종 확정하 <u>며</u> , <u>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별로 관리번호를 지정하여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u> <u><신 설></u>	제5조(공약사항 확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u>한다. 이</u> <u>경우 확정기한은 취임 후 100일</u> <u>이내로 ----.</u> <u>⑤ 총괄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라</u> <u>확정된 공약사항별로 관리번호를</u> <u>지정하고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u> <u>한다.</u>
제6조(실천계획 수립 및 공개) ① 추진단장은 <u>제5조</u> 에 따른 공약사항에 <u>대하여</u> 규정여건 및 재정상황 등을 <u>고려하여</u> 공약사항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u>인천광역시 연수구 홈페이지</u> 등을 통하여 내용을 공개한다. ② ~ ④ (생략)	제6조(실천계획 수립 및 공개) ① - ----- <u>제5조제4항</u> ----- ---- <u>대하여 확정일로부터 60일</u> <u>이내에 ----- 고려한</u> ----- -----, <u>인천광역시</u> <u>연수구(이하 “구”라 한다)</u> ---- -----.
제7조(실천계획 변경) ① ~ ③ (생략) ④ 제3항에 따라 변경된 실천계획은 <u>인천광역시 연수구 홈페이지</u> 에 그 내용과 사유를 즉시 공개한다.	제7조(실천계획 변경)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u>구</u> ----- -----.
제9조(이행실적 공개) ① 추진단장은	제9조(이행실적 공개) ① -----

공약사업별 이행실적을 연 2회 이상 인천광역시 연수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② (생략)

③ 추진단장은 홈페이지 내 의견수렴 창구 개설 등을 통해 주민들과 소통하며 수렴된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

제10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등)

① · ② (생략)

③ 단원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활동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구민, 사회단체원,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 공약이행 평가를 성실히 수행하고 구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11조(단원의 임기 등) ① 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구청장의 재임 기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단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 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생략)

-- 구 -----
-----.

② (현행과 같음)

③ ----- 구 홈페이지 -----

-----.

제10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단원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활동하지 않고, 구정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공약이행 평가 등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 중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발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공개모집에 신청하는 사람이 없거나 신청 인원이 모집정원에 부족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모집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제11조(단원의 임기 등) ① -----

-----, 한 차례만 -----
-----, -----
-----.

② (현행과 같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출입 공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1-208(2021. 6. 28.)호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되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에서 수탁자(한국부동산원)에게 수탁하여 사업시행 중인 인천도시계획시설(사모지근린공원)에 대하여 사업지구 내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 등의 조사를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및 같은 법 제10조(출입의 통지)의 규정에 따라 토지에 대한 출입의 통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울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토지점유자의 인용의무) 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측량·조사 등의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7조(벌칙)제2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2. 11. 23.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명칭 : 사모지근린공원 조성사업

나.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62,936.2㎡

다.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 소 : 인천광역시 원인재로 115

2) 성 명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2. 출입 토지의 내용

가. 출입 사유 : 사업구역 내 토지 및 지장물 기본조사, 측량

나. 출입 토지내역(조서) : ‘붙임1’문서 참고

다. 토지 출입기간 : 2022. 11. 23. ~ 사업 종료 시까지 (일출 후 ~ 일몰 전)

3.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원녹지과(☎ 032) 749-87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토지조서(사모지근린공원) 1부. 끝.

구분번호	소재지	지번		공부지목	용도지역	면적		소유자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소유자분	이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217-69	217-69	도로	보전녹지지역	890	890	1/1	인천광역시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217-70	217-70	도로	보전녹지지역	191	191	1/1	인천광역시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217-71	217-82	도로	보전녹지지역	512	123	1/1	인천광역시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219-1	219-1	도로	보전녹지지역	413	413	1/1	국(건설교통부)
5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219-2	219-2	도로	보전녹지지역	168	168	1/1	국(건설교통부)
6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221-1	221-1	도로	보전녹지지역	1,512	1,512	451/616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165/616	인천광역시
7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221-6	221-6	전	보전녹지지역	63	63	451/616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165/616	인천광역시
8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산4-15	산4-15	임야	보전녹지지역	198	198	1/1	조*성
9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산4-18	산4-18	임야	보전녹지지역	198	198	1/1	김*윤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산4-20	산4-20	임야	보전녹지지역	198	198	1/1	유*임
11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산4-21	산4-21	임야	보전녹지지역	198	198	1/1	조*성
12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산4-22	산4-22	임야	보전녹지지역	198	198	1/1	한*수
13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산4-23	산4-23	임야	보전녹지지역	198	198	1/1	조*성
14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산5-4	산5-56	임야	보전녹지지역	6,450	2,607	1/1	유*모
15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산5-16	산5-16	도로	보전녹지지역	992	992	1/1	미등기
16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산5-17	산5-17	임야	보전녹지지역	298	298	1/1	조*성
17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산5-19	산5-19	임야	보전녹지지역	1,190	1,190	1/3	이*락
								1/3	이*호
								1/3	이*호
18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산5-20	산5-20	임야	보전녹지지역	298	298	1/1	최*규
19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산5-21	산5-21	임야	보전녹지지역	992	992	1/1	박*석
20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산5-22	산5-22	임야	보전녹지지역	1,686	1,686	1/1	박*석
21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산5-23	산5-23	임야	보전녹지지역	694	694	1/1	길*수
22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산5-24	산5-24	임야	보전녹지지역	397	397	1/1	홍*표
23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산5-25	산5-25	임야	보전녹지지역	2,978	2,978	1/1	박*석
24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산5-27	산5-27	임야	보전녹지지역	448	448	1/1	김*연
25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산5-28	산5-28	임야	보전녹지지역	1,555	1,555	1/2	김*연
								1/2	김*연
26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산5-36	산5-57	도로	보전녹지지역	1,825	699	1/1	인천광역시
27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산5-50	산5-50	도로	보전녹지지역	506	506	1/1	국(국방부)
28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산5-51	산5-51	임야	보전녹지지역	29	29	1/1	유*모
29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산5-52	산5-52	임야	보전녹지지역	98	98	1/1	인천광역시
30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산5-54	산5-54	임야	보전녹지지역	655	655	1/1	박*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출입 공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1-203(2021. 6. 28.)호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되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에서 수탁자(한국부동산원)에게 수탁하여 사업시행 중인 인천도시계획시설(학나래근린공원)에 대하여 사업지구 내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 등의 조사를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및 같은 법 제10조(출입의 통지)의 규정에 따라 토지에 대한 출입의 통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울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토지점유자의 인용의무) 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측량·조사 등의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7조(벌칙)제2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2. 11. 23.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명칭 : 학나래근린공원 조성사업

나.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47,079.1㎡

다.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 소 : 인천광역시 원인재로 115

2) 성 명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2. 출입 토지의 내용

가. 출입 사유 : 사업구역 내 토지 및 지장물 기본조사, 측량

나. 출입 토지내역(조서) : ‘붙임1’문서 참고

다. 토지 출입기간 : 2022. 11. 23. ~ 사업 종료 시까지 (일출 후 ~ 일몰 전)

3.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원녹지과(☎ 032) 749-87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토지조서(학나래근린공원) 1부. 끝.

구분번호	소재지	지번		공부지목	현황지목	용도지역	면적		소유자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소유지분	이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325-3	325-3	전	전	보전녹지지역	410	410	1/1	황*호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325-4	325-4	전	전	보전녹지지역	701	701	1/1	김*신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325-5	325-5	전	전	보전녹지지역	7,428	7,428	1/1	김*신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325-7	325-7	대	대	보전녹지지역	546	546	1/1	홍*숙
5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335	335	철도용지	철도용지	보전녹지지역	229	229	1/1	국(기획재정부)
6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산69	산69	임야	임야	보전녹지지역	4,977	4,977	1/1	온*호
7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산69-1	산69-3	구거	구거	보전녹지지역	3,523	3,104	1/1	국(건설교통부)
8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산73-1	산73-1	임야	임야	보전녹지지역	4,649	4,649	96/160	김*진
									16/160	김*경
									16/160	김*미
									16/160	김*순
									1/20	임*주
									1/20	원*미
9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산73-3	산73-3	임야	임야	보전녹지지역	4,066	4,066	1/1	최*심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산76	산76	임야	임야	보전녹지지역	3,570	3,570	8/75	전*창
									8/75	전*성
									15/75	박*홍
									10/75	박*대
									4/75	전*창
									30/75	전*정
11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산77	산77	임야	임야	보전녹지지역	496	496	1/1	미등기
12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산78-1	산78-1	임야	임야	보전녹지지역	2,281	2,281	1/1	순***문숙공파***회
13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산78-2	산78-2	임야	임야	보전녹지지역	1,142	1,142	1/1	이*자
14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산78-5	산78-5	임야	임야	보전녹지지역	1,587	1,587	1/1	순***문숙공파***회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2-1677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ombudsman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ombudsman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자치법규명 : 「인천광역시 연수구 ombudsman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제정이유

가. 「인천광역시 연수구 ombudsman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ombudsman 회의 절차, 고충민원 신청 및 접수 절차, 사무기구에 관한 사항을 제정

나. 명확한 규칙을 제정함으로써 ombudsman의 원활한 운영 도모

3. 주요내용

- 가. 고충민원에 대한 옴부즈만 회의 소집·진행 및 의결 절차
- 나. 고충민원의 조사 방법 및 절차
- 다. 사무기구의 구성·업무 및 운영상황 보고에 관한 규정
- 라. 옴부즈만 사무별 전결 규정 및 공인, 운영세칙에 관한 규정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12. 1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참조 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동춘동, 연수구청)
- 연락처 : 전화 032-749-7138, FAX 749-7049
- E-mail : jhcool77@korea.kr

라. 제출서식

제 정 (안)	사 유(구체적으로)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5. 참고자료

- 규칙 제정안 1부.

[붙임1] 규칙 제정(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ombudsman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ombudsman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ombudsman 운영

제2조(ombudsman 회의 소집)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 ombudsman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ombudsman(이하 “ombudsman”이라 한다)이 회의를 개최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의안의 제목을 표기한 서면으로 그 소집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개최하는 경우에는 전화·구두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② ombudsman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3조(ombudsman의 기피·회피) 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피를 신청하려는 이해당사자는 대표ombudsman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의결 전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ombudsman은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ombudsman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피신청 대상이 되는 옴부즈만은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대표옴부즈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옴부즈만이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회피 사유서를 대표옴부즈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옴부즈만 회의 보고사항) 제23조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옴부즈만 회의에 보고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1. 옴부즈만의 연간 운영계획
2. 옴부즈만의 위촉 또는 해촉에 관한 사항
3. 옴부즈만 관련 조례·규칙의 제정, 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4. 조례 제32조에 규정된 옴부즈만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5. 고충민원의 접수·처리 과정에서 각하 또는 이첩한 사항
6.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성립한 합의, 조정 등 중요사항
7. 옴부즈만이 의결한 고충민원의 사후 처리결과
8. 고충민원 처리의 실태조사와 자체평가 계획 및 결과
9. 그 밖에 옴부즈만 회의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사무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안 작성·배부 등) ① 사무국장은 옴부즈만 회의에 상정할 의안을 작성하여 대표옴부즈만에게 보고하고,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모든 옴부즈만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제출된 의안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사무국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의안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의안대장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의 진행) ① 옴부즈만 회의는 제안 설명, 질문과 토론, 의결의 순

으로 진행한다.

② 의안의 제안 설명은 사무국장이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에 참여한 옴부즈만 또는 사무국 직원이 보충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③ 대표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부서의 공무원·신청인·이해관계인·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서면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관련부서·신청인·이해관계인·참고인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결서 작성) ① 옴부즈만은 의결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의결서를 작성한다.

1. 시정권고, 의견표명, 기각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
2. 제도개선권고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

② 의결에 참여한 옴부즈만은 의결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록의 작성)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옴부즈만 회의 개최 일시·장소 및 공개 여부
2. 참석 옴부즈만 및 배석자
3. 상정된 의안 및 심의 결과
4.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제9조(결정의 통지) 대표옴부즈만은 조례 제27조에 따라 옴부즈만의 결정내용을 알릴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의결서를 첨부한 서면으로 신청인과 관계 부서의 장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등 다른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10조(감사의 의뢰) 조례 제30조에 따라 감사를 의뢰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감사의뢰 등 검토보고서를 붙여야 한다.

제11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ombudsman은 조례 제31조에 따른 권고 등의 이행실태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관계 서류의 제출
2. 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
3.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직원의 출석·진술
4. 그 밖에 ombudsman이 확인·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제3장 고충민원의 접수·조사

제12조(신청 및 접수) ① ombudsman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고충민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술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때에는 접수 공무원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③ ombudsman은 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보완하여야 할 사항 및 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ombudsman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처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원하면 별지 제8호 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고충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

게 알려야 한다.

제13조(신청의 대리 등) ① 고충민원의 신청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별지 제9호 서식의 대리인 선임허가 신청서와 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3. 다른 법률에 따라 고충민원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② 다수의 신청인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대표자 선정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신청의 취하) 신청인(대리인과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옴부즈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자신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15조(고충민원의 조사통보) 옴부즈만이 접수한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고충민원 조사 통보서를 신청인과 조례 제7조에 따른 관할기관의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조사의 방법) 옴부즈만은 조사받는 사람에게 관계법령 및 조례의 규정과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하며, 방문·서면(공문 포함)·구술·녹취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17조(조사의 중지 등) ① 옴부즈만은 제15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않거나, 중지할 수 있다.

1. 조례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신청인이 고충민원을 취하한 경우

3. 그 밖에 조례 제2조제1호의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옴부즈만이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중단 또는 중지한 경우 관련부서와 신청인에게 조사중지 등의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즉시 알려야 한다.

제18조(반복 고충민원 등의 처리) ① 옴부즈만은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2회 이상 알린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같은 사람이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결처리하고,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다른 사람이 신청한 경우에는 이미 처리한 내용의 처리결과를 알리고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이 신청한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19조(합의 및 조정) ① 옴부즈만이 조례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합의 또는 조정을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당사자”라 한다)간의 합의 또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자발적으로 합의가 성립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당사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옴부즈만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라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민원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제20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옴부즈만 등이 고충민원의 조사를 종료하거나 중지한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고충민원 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표옴부즈만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표옴부즈만은 고충민원 조사 결과보고서 내용을 검토하여 옴부즈만 회의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고충민원이 조례 제20조 또는 제2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하, 이첩 등의 방법으로 종결처리한 후 옴부즈만 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충민원 조사 결과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21조(수당과 여비)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옴부즈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 안전 심사, 민원현장 확인·조사 등에 따른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신분증명서)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옴부즈만 및 사무국 직원에게 별지 제14호 서식의 신분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5호 서식의 신분증명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 및 사무국 직원이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때에는 신분증명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옴부즈만이 신분증명서를 분실·훼손한 때에는 사유서를 제출 받고 재발급할 수 있으며, 옴부즈만이 신분을 상실한 경우에는 즉시 신분증명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4장 사무국 운영

제23조(사무국) 조례 제34조에 따른 사무기구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감사담당 부서로 하며, 사무국장은 감사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24조(사무국의 업무)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충민원의 안내·상담·접수 및 민원 조사·처리 지원
2. 옴부즈만 결정사항의 시행 및 사후관리
3. 옴부즈만 회의의 회의록 작성 및 기록 보존

4. 고충민원 편람·서식 등의 보관

5. 그 밖에 옴부즈만 운영에 필요한 업무

제25조(운영상황 보고) ① 조례 제32조제1항에 따른 옴부즈만 운영상황의 보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고충민원의 접수 및 처리 현황

2. 옴부즈만이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한 내용

3. 관련부서의 처리결과(미처리 사유 포함)

4. 그 밖에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운영상황을 보고할 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등의 보호를 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6조(옴부즈만 사무의 전결) 옴부즈만의 능률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옴부즈만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는 별표에 따라 대표옴부즈만 또는 사무국장이 전결처리 한다.

제27조(기록의 관리) ① 옴부즈만의 모든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고, 고충민원기록은 건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결서, 조정서, 합의서 : 준영구

2. 심의·의결 관련문서 : 5년

3. 일반문서 : 3년

제28조(문서 및 공인) ① 공문서의 작성 및 그 밖의 행정업무처리는 「행정효

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② 읍부즈만 운영과 관련하여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별도의 공인을 조각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인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제29조(정보의 공개) 민원기록에 대한 열람·복사 등에 따른 정보의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읍부즈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읍부즈만 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읍부즈만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인천광역시 연수구 옴부즈만 사무의 전결처리에 관한 사항

(제26조 관련)

사무명	사무전결	
	사무국장	대표옴부즈만
1. 민원의 접수 가. 일반적인 사항(단순 대리인 선임 포함) 나. 집단 민원 등의 대리인, 대표자 선정 다. 신청의 보완·취하 라. 관계 부서 이첩	○ ○ ○ ○	
2. 민원의 조사 가. 조사 옴부즈만 결정 나. 조사의 중지·중단 다. 반복민원의 처리·종결 라. 고충민원의 각하(의결대상 제외) 마. 옴부즈만 상정 전 합의 바. 옴부즈만 상정 전 조정 사. 조사결과 보고 아. 신분증명서 발급	○ ○ ○ ○ ○ ○ ○	○ ○ ○ ○
3. 옴부즈만 운영 등 가. 회의소집 나. 의안 작성·배부 다. 의결서 작성 라. 회의록 작성 마. 결정의 통지 바. 재심 여부의 결정 사. 그 밖에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경미한 사항	○ ○ ○ ○ ○ ○	○ ○
4. 권고 및 이행실태 확인 점검 가. 확인점검 계획수립 시행 나. 실태조사 및 평가 시행 다. 감사의 의뢰		○ ○ ○
5. 사무국 운영 가. 운영상황 보고서 작성 나. 관인 및 기록물 관리 다. 정보공개 등 그 밖에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 ○	○

[별지 제1호 서식]

의안대장
(제5조제2항 관련)

[illegible]

[별지 제2호 서식]

인천광역시 연수구 읍부즈만 의결서
(제7조제1항제1호 관련)

민원표시 민원번호, 민원제목

신청인 (신청인 주소)

피신청인

주문

신청취지

이유 별지와 같다.

20 . . .

대표읍부즈만 (서명)

읍부즈만 (서명)

읍부즈만 (서명)

(별지)

이유

1. 신청원인
2. 피신청인 등 주장
3. 사실 관계
4. 판단
5. 결론

[별지 제3호 서식]

인천광역시 연수구 ombudsman 의결서
(제7조제1항제2호 관련)

제목

소관기관

결정사항

이유 별지와 같다.

20

대표ombudsman (서명)

ombudsman (서명)

ombudsman (서명)

)

(별지)

이유

1. 현황

2. 관계법령

3. 문제점

4. 개선방안

○

[별지 제4호 서식]
가. 피신청인 통보용

연수구 옴부즈만

수신자
(경유)

제 목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서**

1. 연수구 옴부즈만에 접수된 고충민원(민원번호, 민원제목)에 관하여 옴부즈만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따라 불임 의결서의 기재와 같이 귀 기관에 시정을 권고(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 귀 기관에서는 이를 존중하여 같은 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라 통지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옴부즈만의 권고(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라 그 이유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옴부즈만의 권고내용(의견내용)은 귀 기관의 처리결과와 함께 공표되거나 같은 조례 제32조에 따라 매년 구청장과 구의회에 보고됨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의결서 1부. 끝.

연 수 구 옴 부 즈 만 인

직원

팀장

사무국장

시행 연수구 옴부즈만-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연수구 옴부즈만-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21967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3층 옴부즈만

/http://www.yeonsu.go.kr

전화번호 032)749-0000

팩스번호 032)749-0000

/

/ 공개 구분

나. 신청인 통보용

연수구 옴부즈만

수신자

(경유)

제 목 고충민원 처리결과 알림

1. 귀하께서 제출한 고충민원(민원번호, 민원제목)에 대하여 연수구 옴부즈만은 붙임 의결서의 기재와 같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2. 옴부즈만의 권고를(의견을) 통보받은 피신청인은 이를 존중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라 통지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다만, 피신청인이 위원회의 권고(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을 통보할 경우에는 이를 다시 심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결서 1부. 끝.

연 수 구 옴 부 즈 만 인

직원

팀장

사무국장

시행 연수구 옴부즈만-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연수구 옴부즈만-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21967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3층 옴부즈만

/http://www.yeonsu.go.kr

전화번호 032)749-0000

팩스번호 032)749-0000

/

/ 공개 구분

[별지 제5호 서식]

담당직원	팀장	사무국장	조사옴부즈만

대표옴부즈만

감사의뢰 등 검토보고서 (제10조 관련)			
민원표시	민원번호, 민원제목		
신청인	○○○	피신청인	
감사대상 기관			
감사의뢰 사항 (위법·부당한 사실)			
참고사항			
검토결과	위 감사의뢰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 . . . 옴부즈만 ○○○ (인)		
조치의견	☐ 감사의뢰 ☐ 감독기관 통보		

고충민원 신청서
(제12조제1항 관련)

1. 신청인	성명(또는 법인·단체명칭)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2. 대표자 또는 대리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신청인과의 관계	
3. 피신청인	기관명	
	주소	
4. 민원 제목		
5. 민원 내용		
6. 그 밖의 참고 사항	가. 소송 또는 다른 불복구제절차의 신청유무 :	
	나. 증거·참고자료, 그 밖의 조사방법에 관한 의견 :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 신청서는 신청인(대리인)이 구술하는 내용을 듣고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유의하실 사항

- ① 민원내용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계속 작성하여 주십시오.
- ② 지면이 여러 장일 때에는 신청인과 작성자가 간인을 하여 주십시오.
- ③ 신청인이 단체·기관이거나 다수인일 경우 대표자란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 ④ ‘피신청인’란은 신청인이 요구하는 처분 등과 관련된 기관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 ⑤ 신청인이 5명 이상인 경우 연명부 원본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 ⑥ 신청민원과 관련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별지 제7호 서식]

고충민원접수처리부
(제12조제4항 관련)

[illegible]

[별지 제8호 서식]

고충민원 접수증
(제12조제4항 관련)

접수번호		민원제목	
신청인	성명(또는 법인·단체 명칭)		주소
대표자 (대리인)	성명		주소
접수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고충민원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20 . .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읍부즈만

※ 민원접수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032-749-XXXX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대리인 선임허가 신청서
(제13조제1항 관련)

1. 민원번호		
2. 신청인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3. 대리인의 인적사항	성명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4. 대리인을 선임 하는 이유		
5. 신청인과 대리인 과의 관계		
6. 대리인의 자격		

「인천광역시 연수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리인을 선임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 대표옴부즈만 귀하

비교	1.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1. 민원번호”에는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 그 문서번호와 일자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3. 자격 증명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	--

[별지 제10호 서식]

대표자 선정 통지서 (제13조제2항 관련)		
1. 민원번호		
2. 신청인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3. 선정된 대표자의 인적사항	성명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인천광역시 연수구 읍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를 선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 읍부즈만 귀하

비고	1.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1. 민원번호”에는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 그 문서번호와 일자를 작성 하셔도 됩니다.
----	--

[별지 제11호 서식]

연수구 옴부즈만

수신자

(경유)

제 목 **고충민원 조사 통보서**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명	
조사기간	
자료제출 등 조사의 내용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본 조사에 귀 부서(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옴부즈만 사무국 담당직원(749-0000)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연 수 구 옴 부 즈 만 인

직원

팀장

사무국장

시행 연수구 옴부즈만-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연수구 옴부즈만-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21967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3층 옴부즈만

/http://www.yeonsu.go.kr

전화번호 032)749-0000

팩스번호 032)749-0000

/

/ 공개 구분

[별지 제12호 서식]

합의서(조정서) (제19조제1항 관련)	
민원 표시	(민원번호, 민원제목)
합의(조정)일시	20 :
합의(조정)장소	

합의(조정)내용

위와 같이 합의(조정)가 성립되었음을 확인함

20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대상기관)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 옴부즈만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3호 서식]

담당직원	팀장	사무국장

대표옴부즈만

고충민원 조사 결과보고서 (제20조제1항 관련)				
민원표시	민원번호 민원제목			
신청인	○○○	주소		
피신청인	○○○	접수일	20	. . .

1. 신청취지
2. 피신청인의 주장
3. 사실 관계
4. 조사옴부즈만의 의견

위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 . . .

옴부즈만 ○○○ (인)

※ 관계법령, 출장 결과보고서, 출석조사서 등 붙임

[별지 제14호 서식]

신분증명서
(제22조제1항 관련)

(앞면)

60mm × 90mm

제 호	신분증명서	3cm × 4cm 사 진
성명 :		
생년월일 :		
위 사람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촉된 인천광역시 연수구 옴부즈만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인		

(뒷면)

◎ 우리구에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옴부즈만이란 행정기관이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를 조사하여 시정을 권고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 이 증을 제시하면 연수구 소속 공무원은 물론 구민께서도 조사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쇄용지 : 특급 190g/m

신분증명서

(앞면)

60mm × 90mm

제 호	신분증명서	3cm × 4cm 사 진
성명 :		
생년월일 :		
위 사람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옴부즈만 사무국에 근무하는 조사관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인		

(뒷면)

◎ 우리구에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옴부즈만이란 행정기관이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를 조사하여 시정을 권고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 이 증을 제시하면 연수구 소속 공무원은 물론 구민께서도 조사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쇄용지 : 특급 190g/m

[별지 제15호 서식]

신분증명서 발급대장
(제22조제1항 관련)

발급 번호	발급일자	성명	생년월일	신규/ 재발급	회수여부	재발급사유	비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자치법규명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2. 개정이유

- 「청원법」 전부개정으로 2022. 12. 23.부터 새로운 청원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원활한 청원제도 운영 도모

3. 주요내용

- 가. 청원심의회 구성 및 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

나. 청원심의회 심의사항 및 심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12. 1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참조 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동춘동, 연수구청)
- 연락처 : 전화 032-749-7138, FAX 749-7049
- E-mail : jhcool77@korea.kr

라. 제출서식

제 정 (안)	사 유(구체적으로)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5. 참고자료

- 규정 제정안 1부.

[붙임1] 규정 제정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훈령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두는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주관부서 및 처리부서)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창(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를 둔다.

②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처리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③ 처리부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주관부서에서 주 처리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하며, 처리부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주관부서에서 처리부서를 지정한다.

제4조(청원심의회 원칙) 법 제8조에 따라 구에 설치하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청원사항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제5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구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구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6조(위원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심의회 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여부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

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5. 「청원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6.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10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해당 청원사항과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2. 위원장이 심의회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하게 심의할 필요가 있어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

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그 밖에 청원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심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처리부서는 제5항의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준수 의무) 위원은 심의 및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청원 관련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

제12조(자료제출 등) 심의회는 청원심의에 필요한 경우 처리부서에 청원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또는 관련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1호는 2022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

처리부서		
청원사항	청원명	
	청원인	
	청원요지	
요구사유		
검토의견	<i>청원사항에 대한 처리부서의 검토의견 작성</i>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10조제4항에 따라 심의회 개최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처리부서의 장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원심의회 귀중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

안 건					
일 시	. . .				
심 의 결 과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원심의회 위원 >					
구 분	성 명	심 의 의 견			서 명
		찬성 (심의결과 동의)	반대 (심의결과 반대)	비고	
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1. 28.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1. 단계별 집행계획(총괄표)

시설명	사업개요		집행방식별 사업비(백만원)							단계별 사업비(백만원)					
	건수	사업규모 (㎡)	총계	재정적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단계
				국비	지방비	지방채	공기업	민간 투자	공공 기여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6년이후
총 계	18	49,399	39,807	0	38,014			1,793		36	2,738	8,658	3,044	9,061	16,270
도 로	11	6,306	13,928		13,928						1,938	4,104	3,044		4,842
주차장	3	8,268	13,515		13,515							4,454		9,061	
공 원	3	31,862	10,571		10,571					36	800	100			9,635
사회복지 시설	1	2,963	1,793					1,793							1,793

2. 시설별 세부내역 : 별첨

3.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연수구청 도시계획과(032-749-865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도로)

연번	시설			위치	면적(㎡)			집행방식별 사업비(백만원)								단계별 사업비(백만원)						최초 고시일	실효 시기	비 고	
	시설명	시설 세분	시설 번호					총계	국비	재정적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단계					
					지방비					지방채	공기업	민간 투자	공공 기여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이후						
					계	시비	구비																		
총계					6,306		6,306	13,928		13,928	6,964	6,964						1,938	4,104	3,044		4,842			
1	소로	3	4	선학동 328-27번지 일원	870		870	802		802	401	401										802	06-06-05	2026년	큰도장지구
2	소로	3	5	선학동 96-48번지 일원	546		546	1,404		1,404	702	702										1,404	06-06-05	2026년	큰도장지구
3	소로	3	6	선학동 98-4번지 일원	1,044		1,044	2,318		2,318	1,159	1,159										2,318	06-06-05	2026년	큰도장지구
4	소로	3	7	선학동 97-1번지 일원	234		234	318		318	159	159										318	06-06-05	2026년	큰도장지구
5	소로	3	3	선학동 137-4번지 일원 (B=6m, L=152m)	912		912	2,666		2,666	1,333	1,333							2,666				06-06-05	2026년	간도장지구
6	소로	3	4	선학동 137-1번지 일원 (B=6m, L=21m)	126		126	378		378	189	189							378				06-06-05	2026년	간도장지구
7	소로	3	5	선학동 135-6번지 일원 (B=6m, L=113m)	678		678	1,938		1,938	969	969						1,938					06-06-05	2026년	간도장지구
8	소로	3	6	선학동 127-3번지 일원 (B=6m, L=224m)	1,344		1,344	2,728		2,728	1,364	1,364							2,728				18-02-12	2038년	간도장지구
9	소로	3	7	선학동 93-26번지 일원 (B=6m, L=13m)	78		78	176		176	88	88							176				18-02-12	2038년	간도장지구
10	소로	3	8	선학동 92-25번지 일원 (B=6m, L=39m)	234		234	600		600	300	300							600				18-02-12	2038년	간도장지구
11	소로	3	9	선학동 91-13번지 일원 (B=6m, L=40m)	240		240	600		600	300	300							600				18-02-12	2038년	간도장지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주차장)

연번	시설		위치	면적(㎡)			집행방식별 사업비(백만원)								단계별 사업비(백만원)						최초 고시일	실효 시기	비 고	
	시설 구분	시 설 명					총계	재정적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단계					
				전체	집행	미집행		국비	지방비		지방채	공기업	민간 투자	공공 기여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이후				
								계	시비	구비														
총 계				8,268		8,268	13,515		13,515	6,758	6,757					0	0	4,454		9,061				
12	주차장	노외주차장 (지하주차장)	청학동 471번지	3,028		3,028	4,454		4,454	2,227	2,227							4,454				04-09-06	2024년	
13	주차장	노외주차장 (지하주차장)	청학동 467번지	4,700		4,700	7,807		7,807	3,904	3,903								7,807			06-03-20	2026년	
14	주차장	노외주차장	선학동 99번지	540		540	1,254		1,254	627	627								1,254			06-06-05	2026년	구월 2지구 편입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공원)

연번	시설			위치	면적(㎡)			집행방식별 사업비(백만원)								단계별 사업비(백만원)						최초 고시일	실효 시기	비 고	
	시설명	시설 세분	시설 번호		전체	집행	미집행	총계	국비	재정적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단계					
										계	시비	구비	지방채	공기업	민간 투자	공공 기여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이후
총계					31,862		31,862	10,571		10,571		10,571					36	800	100			9,635			
15	공원	선학어린이공원	선학동 216-3번지 일원	30,208	-	30,208	5,135	-	5,135	-	5,135	-	-	-	-	-	-	-	-	-	5,135	66-08-31	2030년		
16	공원	소공원 (큰도장지구)	선학동 33-1번지 일원	1,385	-	1,385	4,500	-	4,500	-	4,500	-	-	-	-	-	-	-	-	-	4,500	12-11-26	2032년	구월 2지구 편입	
17	공원	소공원 (간도장지구)	선학동 127-4번지 일원	269	-	269	936	-	936	-	936	-	-	-	-	-	36	800	100	-	-	-	12-11-26	2032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사회복지시설)

연번	시설			위치	면적(㎡)		집행방식별 사업비(백만원)								단계별 사업비(백만원)						최초 고시일	실효 시기	비 고
	시설명	시설 세분	시설 번호				총계	국비	재정적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단계				
					전체	집행			미집행	지방비	지방채	공기업	민간 투자	공공 기여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이후			
총계					2,963		2,963	1,793						1,793						1,793			
18	사회복지 시설	노인 복지 시설	—	동춘동 산55-20번지 일원	2,963		2,963	1,793						1,793						1,793	08-10-27	2028년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도로)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연수구청 도시계획과(☎032-749-8652) 및 공원녹지과(☎032-749-8721)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 11. 24

인 천 광 역 시 장

1. 결정(변경)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도로)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2. 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산22-1번지 일원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141	15	국지도로	370	광3-6	대3-40	일반도로	인고제97호 (1991.7.20)	공원과 중복결정 (옥련동 118-35) 면적 : 57㎡
변경	중로	2	141	15	국지도로	370 (4)	광3-6	대3-40	일반도로	-	

※ ()는 급회 변경구간임.

- 도로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 2-141	중로 2-141	- 노선 중 일부구간을 공원과 중복결정 - 중복결정 면적: 57㎡ (옥련동 118-35)	송도2근린공원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보행육교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도로 중 일부를 공원과 중복결정 함(도로시설은 변경 없음)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송도2 공원	근린공원	연수구 옥련동 산22-1번지 일원	60,142	증) 57	60,199	총독부고시 제13호 (1944.01.08)	중로2-141 중복결정 (면적:57㎡)

- 공원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송도2 공원	- 면적변경 - 면적: 60,142㎡ → 60,199㎡ (증 57㎡)	도로(중로2-141호선)에 의해 단절된 공원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보행육교를 설치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로와 공원을 중복결정 함

4. 지형도면: 게재생략(비치된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문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 부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11.28.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 신규 부여된 도로명 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관련지번	신규도로명주소
2019.03.15	인천타워대로 시작점에서 1800m 떨어진 오른 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송도동 92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180번길 11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공간정보과 도로명담당자(☎749-7602)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법 제19조(도로명주소의 사용 등)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됩니다.
- ▶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도로명의 변경 절차) 및 제26조(건물번호의 변경·폐지 절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도로명 등의 변경 및 폐지)에 의거 도로명이 고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문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 부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11.28.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 신규 부여된 도로명 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관련지번	신규도로명주소
2018.04.13	송도6,8공구 사업지구 명칭을 반영	송도동 312-1 외 1	인천광역시 연수구 랜드마크로 2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공간정보과 도로명담당자(☎749-7602)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법 제19조(도로명주소의 사용 등)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됩니다.
- ▶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도로명의 변경 절차) 및 제26조(건물번호의 변경·폐지 절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도로명 등의 변경 및 폐지)에 의거 도로명이 고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